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97
----------	-------

발의연월일 : 2025. 8. 29.

발 의 자 : 박상혁 · 박용갑 · 최혁진
진선미 · 박은정 · 김주영
허 영 · 박균택 · 김영환
신장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두지 않음.

그런데 최근 침해사고의 발생으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이용자들에게 침해사고의 위험성과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통지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 · 경보 · 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 중 “경보”를 “경보·통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사고의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계

재

⑧ 제7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침해사고의 예보·경보·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 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침해사고의 예보 · <u>경보</u>	2. ----- <u>경보 · 통지</u>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⑦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u> <u>침해사고의 예보 · 경보 · 통지</u> <u>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u> <u>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u> <u>수 있다.</u>
	1. 「 <u>전기통신사업법</u> 」 제2조제 <u>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u> <u>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u> <u>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u> <u>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u> <u>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u>

<신 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
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
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
한 정보의 게재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
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
요한 정보의 게재

⑧ 제7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
라야 한다.